

체험형 청년인턴(든든동행파트너) 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채용인원	응시자격 및 업무
든든동행 파트너	16명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중증: 주 5일, 일 4시간 근무 가능자 - 경증: 주 5일, 일 8시간 근무 가능자 (업 무) - 간호·이송 보조, 고객응대·안내 보조, 시설·비품관리 보조 등 가능자
공통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현재 중앙보훈병원에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임용일, 근무장소, 직무, 근무시간 등은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6.11.12.(목) ~ '27.6.18.(금)

※ 계약만료 전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최대 '27.9.19.까지 계약연장 검토

○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모 집 분 야	배치부서	근무형태	급 여(정액제, 세전)
든든동행 파트너	전 부서	- 중증: 주 5일, 일 4시간 - 경증: 주 5일, 일 8시간	- 중증: 월 108만원 - 경증: 월 216만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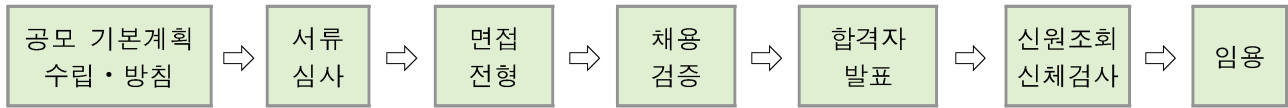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3.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4.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 채용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지원서 접수	'26.10.8.(목)~10.19.(월) 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로 접수
서류합격자 발표	'26.10.20.(화)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적/부 심사)
면접시험	'26.10.22.(목)~10.23.(금) 예정	· 블라인드 면접(직무·공통역량)
채용검증위원회	'26.10.26.(월) 예정	· 공정채용 여부 확인
최종합격자 발표	'26.10.27.(화) 예정	· 면접점수 100%(+가점) 고득점자순
합격자서류 등록	11.3(화)~11.5(목) 17시까지	· 12시~13시 제외
임용(예정)	'26.11.12.(목) 예정	· 직무적응을 위한 지원고용 실시 후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중앙보훈병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문자발송 등 별도 통보

가. 서류심사

○ 심사방법

구분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배점
배점	자격여부 판단	100%	100점
가점	-	만점의 5~10%	5~10점

나.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면접전형 만점의 60% 미만 득점자 불합격(과락)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점수 산정방법

서류심사	면접시험	가점(취업보호, 장애인 등)	계
-	100점	전형별 만점의 5~10% 부여	최대 1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면접전형 결과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26.10.27.(화) 예정, 병원 홈페이지 등 게시
-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범위 내로 예비합격자 운영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입사포기, 중도퇴사 시 성적순으로 채용하며, 임용 가능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모집대행 [이메일 제출]

- 접수대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접수기간: '26.10.8.(목) ~ '26.10.19.(월) 09:00까지
-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서 및 장애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서 제출방법: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daeun20@kead.or.kr)로 제출

< 지원서 등 접수관련 유의사항 >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위배사항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4) "블라인드 채용 위배사항 처리 기준"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불성실 작성(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타기관명 기재, 비속어 등)으로 인한 불이익 (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시 "자격증 란"에 필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증을 필수기재**하며, ①면허(자격)증 명 ②면허(자격) 번호 ③발급(취득) 일자 ④발급 기관 필히 입력
- 필수증빙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사진,나이,성별 등)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
- 지원서상 기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경력 기간 등은 사전에 필히 확인)
- 필수서류 검증 결과 지원 자격과 증빙 불일치, 파일 안열림·식별 불가능 등으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자의 경우 등 불합격으로 처리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이 가능** 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해당 병원에 증빙서류 원본 제출(제출시기 별도 안내)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며, 팩스번호 및 담당자 이메일은 별도 공지)
-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26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향후 인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중앙보훈병원 전 부서에 순환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임용통보 연락 후 2일 이내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임용예정 사실이 통보되며 2회 이상 임용의사 회신이 없을 시 최하위로 임용 순위가 조정됩니다.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제출서류, 지원서 작성 항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체검사(MMPI검사 등 인성, 조직적합도 검사 포함)·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공고일 기준 우리 병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서, 동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6. 10.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http://seoul.bohun.or.kr>)